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원 임기 및 조합장 연임 규정 정비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40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임원 임기 및 조합장 연임 규정 정비	2
(1)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완화	3
(2)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제한	8
(3) 조합원/비조합원 이사의 임기 구분	10
2. 시행일 등 부칙 규정	14
[참고자료]	16

I. 제안경위

1. 제안자: 윤준병 의원 등 10인
2. 제안일: 2025. 9. 12.
3. 회부일: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비상임인 조합장에 한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임. 다만, 한 번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에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임원 임기 및 조합장 연임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 현재 한 차례만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며, ③ 현재 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임기를 조합원인 이사(4년)와 그 밖의 이사(2년)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

[표] 현행과 개정안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조합장 연임 제한	◦ 비상임 조합장 1차례 허용 ◦ 상임 조합장 2차례 허용	상임/비상임 차별 없이 2차례 허용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	설립 당시 임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 초과 불가
이사의 임기 구분	조합장과 이사: 임기 4년	◦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임기 4년 ◦ 그 밖의 이사: 임기 2년

나. 검토의견

(1)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완화

- 개정안은 현재 한 번만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u>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u> <u><신 설></u> ② ~ ④ (생략)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u>다음 각 호와 같고</u>----- -----<u>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u>----- -----<u>.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u> <u>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u> <u>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u>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 수협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수협중앙회 회원을 기준으로 지구별수협 70개, 업종별수협 19개 및 수산물가공조합 2개 등 총 91개소가 설립되어 있음.¹⁾

1) 단위수협 설립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 수협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²⁾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정관 변경, 임원 선출·해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고,³⁾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의 정수 및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하거나, 대의원회·이사회에서 선출 방식으로 선출하고,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2) 지구별수협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정들은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에도 동일하게 준용됨.

3)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이하 생략)

4) 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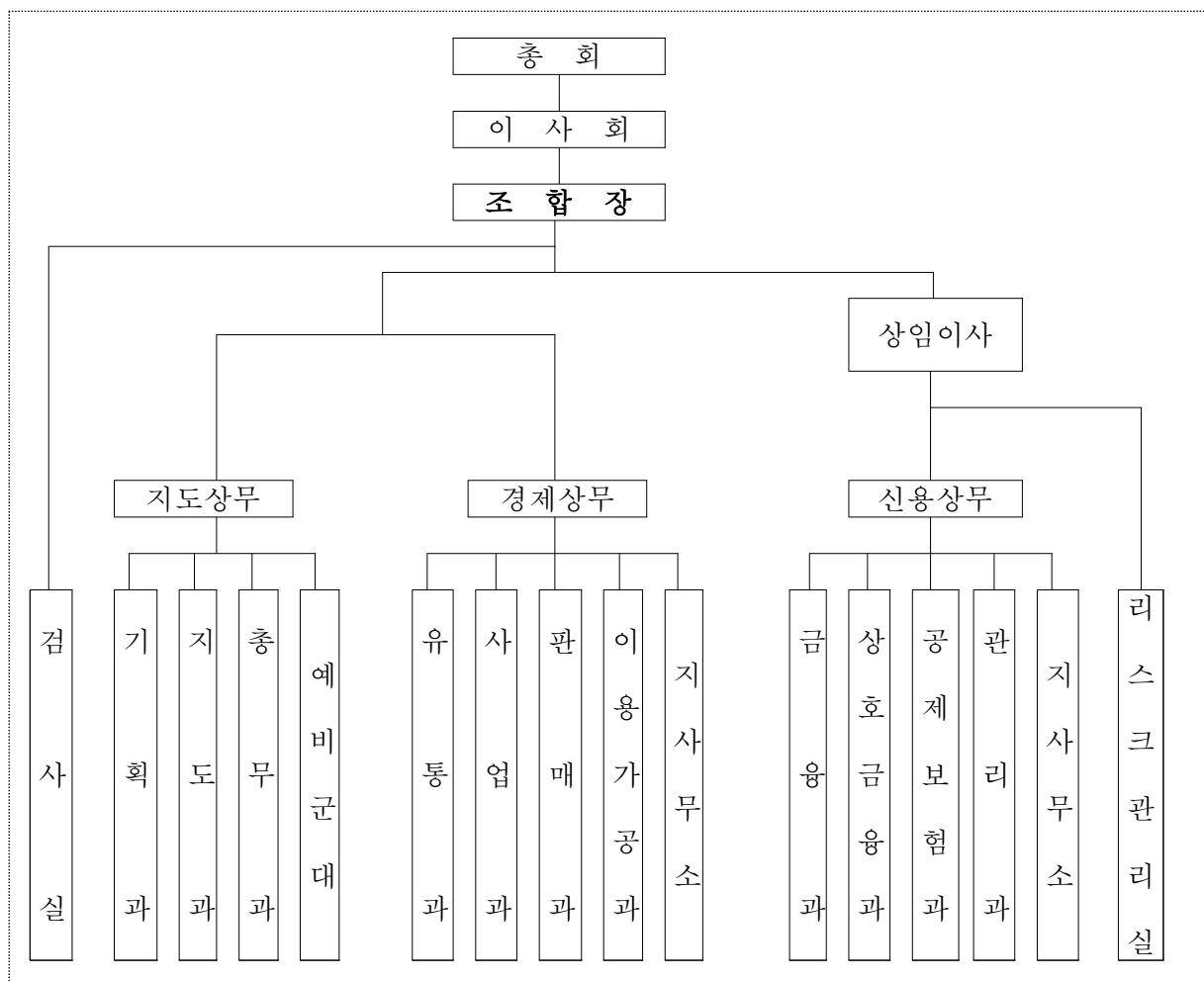
5)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 현재 91개 수협 중 89개 조합은 상임 조합장을 두고 있고, 2개 조합 (냉동냉장수협, 추자도수협)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있는데, 냉동냉장수협은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추자도수협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2년 동안 이행하지 못하여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 지배구조도]



* 자료: 수협중앙회 자료 참조

2. 대의원회의 선출
3.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
-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하 생략)

□ 법 제47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단위수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 또는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대행함.

다만, 신용사업 등 금융 관련 업무는 조합장의 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이사가 전담하고 그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고 있음.⁶⁾

□ 조합장의 근무형태를 비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상임 조합장이 책임경영 측면에서 장점은 있으나 단위수협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이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었으나,⁷⁾

현재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는 조합은 2개에 불과하여 전문경영체제 확립이라는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권한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현행 1회에
서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2회로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합장 후보가 장기적 조직운영 참여를 위해 상임 조합

6)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구별수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한다.

②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진다. (이하 생략)

7)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정관으로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의 제정·개정이유 중

장으로 선출되려는 유인을 줄이고, 비상임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여 전문경영체제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한편, 「농업협동조합법」과 「산림조합법」에서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⁸⁾

이와 관련해서는 농협과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려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참고] 협동조합별 조합장 연임 규정 비교

구 분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임 기	4년		4년		4년	
연임제한	두 번만	한 번만	2차에 한하여	규정없음	두 번까지만	규정없음

8)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산림조합법」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3호)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39호)

(2)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제한

- 개정안은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u>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u> <u><신설></u> ② (생략)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임기를 그 조합장의 임기로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인 경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u>다음 각 호와 같고</u>----- -----<u>하며,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u>----- -----<u>.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u>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우에는 제1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	

- 현행법은 조합 설립시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임원에 관하여는 각 그 등기일부터 2년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제3항·제4항).

이는 합병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지배권을 그대로 승계하여 권한이 편중되거나, 합병 초기에 대표성 및 정당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설립 초기 임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설립 직후 소수 임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으로 이해됨.

특히 농협 및 산림조합에서는 이미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 간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¹⁰⁾

10)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산림조합법」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

(3) 조합원/비조합원 이사의 임기 구분

- 개정안은 현재 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임기를 조합원인 이사(4년)와 그 밖의 이사(2년)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각 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u><신설></u> ② ~ ④ (생략)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 <u>다음 각 호와 같고</u> ----- ----- <u>하며, 조합장은 2</u> <u>차에 한하여</u> ----- ----- <u>. 다만, 설립 당시의</u> <u>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u> <u>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u> <u>다.</u> <u>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u> <u>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u>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단위수협은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고,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며, 1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 이사 1명을

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11) 다만, 제4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자산 규모가 500억원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선임할 수 있음.¹²⁾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91개 단위수협 중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조합은 총 87개로, 89명의 상임이사가 재임 중이며, 상임이사 중 14인은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

□ 개정안은 조합원인 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구분하여 조합원 이사의 경우 4년, 비조합원 이사의 경우 2년으로 각각 다르게 정하는 한편, 현행 상임이사에 대한 임기 중간평가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임원의 임기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협동조합 간 규율방식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2)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지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규모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의 선출
3.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
- ④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하 생략)

□ 지역농협의 경우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으로 둘 수 있고,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비조합원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하는데,¹³⁾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대부분 대형 조합으로 현실적으로 상임이사는 비조합원으로만 구성되고,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상임이사의 임기가 모두 2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됨.

반면 단위수협의 경우 현재 상임이사 중 조합원(14명)과 비조합원(75명)이 혼재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지위와 책임을 지는 상임이사임에도 조합원 여부에 따라 임기가 각각 4년과 2년으로 달라지게 되어,

동일 직위에 대한 임기 차별의 정당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해양수산부는 상임이사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임기가 달라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농협과 산림조합 사례처럼 상임이사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¹⁴⁾

13) 「농협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지역농협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14) 「산림조합법」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일부 단위수협에서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임 이사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기를 단축할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과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¹⁵⁾

[참고] 협동조합별 임원의 임규 규정 비교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제42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15) 의견을 회신한 75개 조합 중 17개 단위수협*에서 반대의견을 냄 (57개 찬성, 1개 의견없음)

* 제3·4잠수기, 대형선망, 나로도, 신안군, 통영, 사천, 근해유망, 패류살포양식, 전남동부, 통조림 가공, 고창군, 보령, 대천서부, 강릉시, 해남군, 제주어류양식, 냉동냉장수협

2. 시행일 등 부칙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안 부칙 제1조),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표] 개정안 조문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완화, ② 설립 당시 임원의 임기 명시, ③ 조합원/비조합원 이사의 임기 구분 중 ①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완화 및 ③ 조합원/비조합원 이사의 임기 구분과 관련해서는 부칙을 통해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①과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연임 제한 완화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규정은 현직 비상임 조합장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조합장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③과 관련하여, 법 시행 당시 비조합원인 이사의 경우 선출 당시 임기(4년)가 바로 단축되어 개정안에 따른 임기(2년)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2

참 고

단위수협 설립 현황

지 역	조 합 명	지 역	조 합 명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경 기(1)	경기	서 울(2)	근해안강망, 민물장어양식
인 천(4)	경인북부, 경인서부, 인천, 영흥	전 남(5)	근해유망, 전남정치망, 서남해수어류, 전남서부어류, 제3·4구잠수기
강 원(9)	고성군, 죽왕, 속초시, 동해시, 삼척, 삼척원덕, 양양군, 강릉시, 대포	경 북(1)	동해구기선저인망
충 남(8)	당진, 서산, 보령, 서천서부, 서천군, 태안남부, 안면도, 대천서부	경 남(5)	멸치권현망, 굴수하식, 패류살포양식, 근해통발, 멍게수하식
전 북(4)	군산시, 김제, 부안, 고창군	부 산(5)	대형선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경남정치망, 제1·2구잠수기, 대형기선저인망
전 남(14)	강진군, 목포, 나로도, 영광군, 진도군, 완도금일, 완도소안, 해남군, 여수, 신안군, 거문도, 고흥군, 장흥군, 전남동부	제 주(1)	제주어류양식
경 북(8)	경주시, 강구, 구룡포, 울릉군, 울진죽변, 울진후포, 영덕북부, 포항	【수산물가공수협】	
경 남(14)	거제, 고성군, 마산, 삼천포, 울산, 부경신항, 진해, 통영, 하동군, 남해군, 육지, 사천, 사랑, 창원서부	서 울(2)	통조림가공, 냉동냉장
부 산(2)	부산시, 기장	합 계(91)	지 구 별 수 협 : 70 업 종 별 수 협 : 19 수산물가공수협 : 2
제 주(6)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제주시, 추자도, 한림		

자료: 해양수산부

참 고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및 상임이사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합 현황	○ 전체 91개소(지구별조합 70, 업종별조합 19, 가공조합 2개소) (단위 : 개)												
	구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지구별	70	-	1	4	9	8	4	14	8	14	2	6
	업종별	19	1	-	-	-	-	-	6	1	5	5	1
	가공	2	2	-	-	-	-	-	-	-	-	-	-
조합장 및 상임이사 선거제도	구분		임기		선출방식								
	조합장		4년		○ 총회 또는 총회외(직선), 대의원회, 이사회(간선)								
	전무제		제한없음		○ 이사회 의결 → 조합장 임면								
	상임이사제		4년		○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 총회 선출								
	※ 조합장 선거제 현황(현재 조합장 임기 : '23.3.21~'27.3.20) - 조합장직선제(87개소) : 지구별(70), 업종별(16), 수산물가공(1) - 대의원간선제(3개소) : 업종별 (패류살포양식, 근해유망, 근해안강망) - 이사회호선제(1개소) : 수산물가공(냉동냉장수협)												
비상임 조합장 현황	○ 91개 조합 중 2개 조합(냉동냉장수협, 추자도수협)이 비상임 조합장으로 운영 - 냉동냉장수협 : '10.10.19 비상임으로 전환 / 대부분 조합원이 법인의 대표임에 따라 상임 조합장 역임 곤란 - 추자도수협 : '19.1.11년 비상임 전환/ 수협법\$46①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2년 연속 미이행												
조합장 연임 현황	(단위 : 개, %)												
	구분	계		초선		재선		삼선					
	조합수	91		46		33		12					
	비율(%)	100		50.5		36.3		13.2					
상임이사 현황	상임이사 현원	상임이사 중 조합원		비고									
	89명	14명 (현원 대비 15.7%)		○ 현재 기준 상임이사 89명 - 87개 조합 : 상임이사제 ※ 전무제(4) : 삼척원덕·육지·대포·전남정치망 - 8개 조합(+) : 상임이사 2인(신용·경제) (보령·목포·완도금일·여수·성산포·한림·군산시·서귀포) - 6개 조합(-) : 직무대행(동해시·속초시·서천군·부안·서귀포(경제)) 및 관리인(경남정치망)									

자료: 해양수산부